

##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- 010 호
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항,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신제품통합인증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3월 27일  
지식경제부장관

## 신제품통합인증요령

제정 2005. 12. 12.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 - 106 호  
개정 2006. 10. 30.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 - 111 호  
개정 2008. 03. 27.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- 010 호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신제품(New Excellent Product : NEP) 인증업무에 기술표준원장이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- ① “신제품”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.
- ② “실용화”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신제품 인증의 대상)

- ①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2항에 따른다.
-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한다.

제4조(신제품 인증의 신청)

-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의 신제품인증신청서 등(이하 “신청서류”라 한다)을 갖추어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신청서류 중 선행기술의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「특허법」제58조에 따라 지정 받은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선행기술의 조사를 할 수 없는 신제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한국특허정보원
2. (주)웍스
3. (주)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

- ③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인이 그 기간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
-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 및 인증심사관련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5조(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)

-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(이하 "인증심사"라 한다)를 위하여 서류심사·현장심사·제품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인증심사결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한다.
-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(이하 "세부판단기준"이라 한다)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한다.
- ③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제품 인증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고, 심의위원회에 신청제품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한 제품에 관한 전문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신제품 인증 평가위원회(이하 "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④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-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(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면제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)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⑦ 기술표준원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 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 더 14일간 기술표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9조에 따른 종합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이해관계자 및 수요자"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서류심사) 제5조제1항에 따른 "서류심사"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개발 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, 기술적 수준,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제7조(현장심사)

-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"현장심사"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·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(하청공장을 포함한다)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와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

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부판단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현장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, 신청인에게 현장심사일 7일전에 심사일·심사내용 등을 통보하고 심사를 실시한다.
- ③ 현장심사반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8조(제품심사)

-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“제품심사”라 함은 신청제품에 관한 품질평가기준(품질시험항목, 시험항목의 중요도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)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·분석·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·분석·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기관에서 시험·분석·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제품의 수요기관 또는 전문시험·연구기관에서 시험·분석·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기술표준원
  - 2. '국기표준기본법'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·검사기관
  - 3. '전기통신기본법'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  - 4. '전기통신기본법' 제33조의2에 따른 지정시험기관
  - 5. '전파법' 제46조제4항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
- ③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에서 시험·분석·평가한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인정하고 별도의 시험·분석·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종합심사) 제5조제1항에 따른 “종합심사”라 함은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,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한 결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.

## 제10조(신제품 인증심사의 면제)

- ①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제품이 영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,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·외 공장 또는 사업장(하청공장을 포함한다)이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또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 심사에서 품질보증시스템 점검에 관한 심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.
- ② 영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른 “그 밖에 정부가 발굴·지원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고 시하는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영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제품인 경우
  - 2. '발명진흥법'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어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인 경우

- 3.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인 경우
- 4.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신속한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

- ③ 신청제품이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6조의 서류심사에서 개발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및 기술적 수준 등의 신기술성에 관한 심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인증심사 단계의 범위들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·외 공장 또는 사업장(하청공장을 포함한다)이 '산업표준화법'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또는 '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'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에서 품질보증시스템 점검에 관한 심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11조(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)

- ①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(이하 "유효기간"이라 한다)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(이하 "연장신청인"이라 한다)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(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는 제외한다)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심사결과 인증된 신제품(이하 "연장신청제품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.
  - 1.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연장신청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
  - 2. 연장신청제품을 신제품 인증 당시의 수준으로 제조할 수 없는 경우
-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기술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심사하여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
제12조(신제품 인증서의 교부 등)

-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3조의 신제품 인증서(국문·영문, 이하 "인증서"라 한다)를 교부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당해 신청제품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(이하 "인증 받은 자"라 한다)가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별표 1의

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교부 한다.

## 제13조(신제품 인증의 공고 등)

-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 받은 신제품(이하 "인증신제품"이라 한다)의 공고는 영 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르되,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.
- ② 기술표준원장은 신제품인증제도, 신청제품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, 인증신제품 검색, 인증신제품 판매실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제품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## 제14조(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)

- ① 신제품 인증표시(이하 "NEP마크"라 한다)의 사용은 영 제21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다.
- ② 제1항에 따른 NEP마크의 사용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.
-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·포장 및 홍보물 등에 NEP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다.
- ⑤ 기술표준원장은 인증받은 자가 NEP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공고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## 제15조(이의신청)

- ① 제12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이의신청인"이라 한다)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증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.
-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.
- ⑥ 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, 이의신청인 및 제4항의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증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- ⑦ 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### 제16조(신제품 인증의 지원)

-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받은 자에게 금융·기술 및 홍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17조(실적 제출 등)

- ① 인증 받은 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신제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·분석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지원시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### 제18조(사후관리)

- ①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신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이1~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.
  1.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당하는 인증신제품인 경우
  2. 인증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3.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
  4. 인증신제품의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
  5.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7일전에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·검사·조사·제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4인 이내로 조사반(이하 "사후관리 조사반"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.
-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의한 품진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진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요비용은 인증받은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8조 제2항의 공인시험·연구기관에서 시험·분석·평가를 6개월 이내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인정하고 별도의 시험·분석·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라 제품심사를 의뢰받은 공인시험·연구기관은 대상제품의 규격·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진시험 성적서를 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송부한다.
- ⑧ 제7항에 따라 품진시험성적서를 송부받은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⑨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제품심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신제품 또는 국내·외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인증신제품에 대해 실시한다. 다만, 인증신제품을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실

시할 수 있다.

- ⑩ 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치분기준에 따라 치분한다.

## 제19조(개선권고)

-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0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권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등(개선사항 및 성적서 등을 포함)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개선결과를 통보 받고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.

## 제20조(신제품 인증의 취소)

-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0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취소 예정서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취소 처분서로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다.
- ⑤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취소를 건정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고 인증신제품으로 구매를 중지하도록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한다.

제21조(미발유지의 의무)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,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,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18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신제품과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 제22조(소요비용 부담)

- ①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7조제1항에 의한 현장심사 현장이 국외 하청공장일 경우에는 전문가 2인 이내 및 기술표준원 품목담당자 1인에 대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23조(수당 및 여비) 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,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,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18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(포상) 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25조(업무대행)**

-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조사·분석 또는 제18조에 따른 사후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신제품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당해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6조(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) 기술표준원장은 신제품 인증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27조(시행세칙) 기술표준원장은 신제품 인증의 접수, 인증심사 및 인증심사 면제 등의 세부절차, 세부판단기준,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부칙(2005. 12. 12)**

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

- ①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(EM) 및 우수환경설비인증(EEC)과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(TI)은 이 요령에 의한 신제품인증으로 본다.
- ②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신기술(NI)인증, 신기술(KI)인정 중 제품에 대한 인증은 이 요령에 의한 신제품인증으로 본다.

**부칙(2006. 10. 30)**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 고시에 따라 접수되어 인증심사중인 신청제품은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.

제3조(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조(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.

**부칙(2007. 05. 01)**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08. 03. 27)**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※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ts.go.kr>)의 고시·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